

33. 교통영향평가지침증개정

건설교통부고시제1999-4호 1999. 1. 15.

교통영향평가지침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
식평가에 의한다.

1. 영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사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17)도시계획사업중 공원의 건설
나. (23)기타사업
2. 영 제13조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
가. (2) 종교시설중 교회, 성당을 제외
한 시설물
나. (3) 의료시설중 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시설물
다. (13)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도서관,
초.중.고교
라. (14) 저장시설중 저장탱크
마. (17) 사회복지시설
바. (18) 위험물 판매시설중 주유소,
가스충전소
사. (20) 위생시설
아. (21) 장례관련시설

자. (22) 청소년 수련시설

차. (23) 동물관련시설

카. (24) 기타시설

3.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내에 설
치하는 개별 시설물

4. 영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사업 및 시설
(다만,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별표1 제1
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의 대상 사업 또는 시설

②약식평가의 실시방법 및 절차등은 다
음 각호에 의한다.

1.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평가목표년도까
지로 한다.

가. 시설 : 완공후 1년 및 5년

나. 사업 : 완공후 1년, 5년 및 10년

2. 공간적범위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범위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시설 :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내의 가로

나. 사업 : 당해 사업지의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8개 교차로 및 그 범위 내의 가로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 환경의 조사분석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교통유발원단위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개이상의 관련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산출한다. 단, 관련자료가 모두 최근 3년이내의 실측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식평가대상사업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서의 내용항목을 교통개선대책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종합개선안도, 개선효과, 개선안의 시행계획등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중 “색상도면으로 한다.”를 “가급적 색상도면으로 한다.”로 하고, 제6항중 “끝문에는 평가용역계약일, 용역대가, 평가용역 수행기간,”를 “끝문에는 평가용역 수행기간,”으로 하며, 제7항중 “이 경우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책임자 또는 평가보조자로 등록되지 아니

한 자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평가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보다 유효한 다른 교통개선대책이 있는 경우”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4항중 “상정하여야 하며, 사전검토로 인하여 평가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연하여서는 안된다.”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 평가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와 평가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가급적 사전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사전검토에서 제시하지 않은 의견을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기하여 심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제1항 관련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제37조제1항 관련)

항 목	허 용 범 위	기 타	
가 로	도로 신설	-연장 또는 5%이하 축소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 소	- 교차지점신설시 및 차로수의 축소 시는 제외
	도로 확폭	-연장 또는 길이의 5%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5%이하 축소	- 단, 차로폭 2.75m 이상 유지
	교차로의 운영	-차로폭 5%이하 축소 -가각의 회전반경 5%이하 축소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5%이하 축소	- 단, 차로폭2.75m이상 유지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 지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단, 사업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호등 설치의무 변경불가
진 출 입 동 선	진출 입구	-위치 : 10m이하 변경 -폭원 : 5%이하 축소 또는 25%이 하 확폭 -가각부 : 5% 이하 축소	- 단,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 불가
	진출입로 (진출입 구-주차 장간 연결로)	-위치 : 10m이하 변경 -폭원 : 5%이하 축소 -가각부 : 5%이하 축소	
	진출입동 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불가(일반↔양방,방향 전환 등)
	완화차로 (Set Back 포함)	- 길이 : 5%이하 축소 - 폭원 : 5%이하 축소	- 위치변경 불가

항 목		허 용 범 위	기 타
주 차	주차면수 의 추가	- 심의의결대수의 5%이하 증가	- 단, 규모증가비율 적용가능
	주차면수 의 제거	- 심의의결대수의 5%이하 제거	- 단,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 의 제.개정 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감 소인 경우 제거 가능
	구획위치 조정 및 재배치	- 심의의결대수의 30%이하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5m이하변경 - 회전반경 : 5%이하 축소	- 단,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이 어야함 - 진. 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 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내 변경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불가 - 램프형태 변경불가(원형↔직선)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램프설치		
	기계식 및 자차 주차비율	- 자차식 비율증대 또는 5%이하 축소	
대 중 교 통	버스정류 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5%이하 축소 - 폭 (Taper포함) : 5%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10m이하 변경	- 단, 사업지 진출입구측 또는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 불가 - Set-Back시는 기존보도폭 유지
	택시정류 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5%이하 축소 - 폭 (Taper포함) : 5%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10m이하 변경	- 단, 사업지 진출입구측 또는 교차로 가가부측으로 변경 불가 - Set-Back시는 기존 보도폭 유지
	대중교통 노 선조정.추가		-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항 목		허 용 범 위	기 타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보도 설치	- 연장 : 5%이하 축소 - 폭원 : 5%이하 축소	- 위치변경 불가
	보도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5%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5%이하 축소	- 위치변경 불가
	보행동선 체계	- 연장 및 축소	- 단, 단절불가
	횡단보도 신설	- 폭원 : 10%이하 축소 - 위치 : 10m이하 변경	- 사업지내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신호등설치조건 변경불가
	자전거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5%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5%이하 축소 - 위치 : 10m이하 변경	- 사업지내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자전거보관소 설치	- 계획면수의 5%이하 축소	- 위치변경 가능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5%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5%이하 축소 - 위치 : 10m이하 변경	- 사업지내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안전	과속방지턱 시설	- 연장 또는 길이의 5%이하 축소	- 심의시 조건부여된 시설의 설치의 무 변경불가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경찰서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미끄럼방지시설		
	각종 안내판 시설		
	각종 경고등 설치		
	노면파킹, 표지병		
	기타 가드레일등 안전시설		